



급여명세서에 교통비 및 식대가 안전관리비에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현재는 연봉개념으로 하다보니 교통비 및 식대가 별도로 지급되어 출근수 및 출장기록대장에 기입된 거리에 따라 식대와 교통비가 지급되고 있는데 식대와 교통비가 안전관리비에 포함이 되는지 ?

안전관리자의 급여 중 정기,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및 통근보조비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말하는 근로의 대상인 임금의 성질을 갖는 금원으로 보아 안전관리비의 사용, 정산이 가능합니다. 실비변상으로 취급되는 경우에는 임금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품으로서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
얼마전 관에서 건강검진에 관한 공문이 왔는데, 검사항목에 치과검사가 있습니다. 아마도 대부분의 현장에서 채용시 건강검진 시행규칙 제100조 항목 중 치과검사는 미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

그것은 건강검진 기관이나 병원에 치과가 따로 없기 때문인데, 이런 경우에 별도로 치과에 가서 검진을 받아야 하는지요.

일반건강진단기관에 치과가 없는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0조에 의거 채용시 건강진단에 치과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치과검사의 내용은 결손치, 치주질환 및 치아우식증 등입니다.

당해 사업장은 작업구간이 약 11km에 걸쳐져 있으며, 작업 여건이 육상부와 해상부로 구분되어 있어 작업에 따른 현장의 안전관리에 애로가 있습니다. 따라서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양질의 안전교육을 실시코자 기존 육상부에 안전교육장을 만들어 근로자의 안전교육 및 각종 안전관련 회의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작업구간이 육상부와 해상부가 분리되어 있어서 현장안전점검 및 순찰활동, 교육에 있어 애로사항이 발생되는 등 안전관리활동에 문제가 있어 보다 더 효율적이고, 체계적이며 양질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고자 해상부 2개소에 안전교육장을 추가 설치할 예정인데 감리단에서는 안전교육장 추가설치시 안전관리비로 인정 할 수 없다고 하여 안전교육비 및 행사비의 적정범위 안에서 안전교육장을 추가로 설치코자 할 때,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답변바랍니다.

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(노동부고시 제2001-22호) 제7조(사용기준)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“안전교육장”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(단, 공사 설계내역서 상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인 경우는 사용할 수 없음) 안전교육장 설치비용은 “5.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”的 항목에 포함되므로 동 항목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30%를 초과하여서는 안됨을 알려드립니다. 아울러, 안전교육장 추가설치는 향후 공정에서의 안전관리비 예상 소요비용과 현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현장 안전관리를 위해 시공사가 적절히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

**Q** 강교제작 및 설치공사를 1개 업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며, 강교제작 및 설치공사는 대부분이 강구조물 제작작업이고, 설치공사는 계약금액의 약 10% 내외를 차지하고 있는데, 안전관리비 계상 시는 총계약금액에 구조물 제작공장 일부의 노임과 재료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강구조물 제작공장에서 사용되는 안전관리비도 당해 건설공사에 계상된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요.

즉, 강교제작 설치공사를 하도급하면서, 강교 제작은 별도 제작공장에서 제작하고, 강교 설치는 당해 공사 현장에서 시행되는 경우(제작과 설치업체는 동일함) 모두 당해 공사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요.

**Q** 강교 제작 작업이 건설현장에서 이루어진다면 하나의 건설사업장으로 보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으나, 건설현장과 시간적,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면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.(제조업종인 제작공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음)



**Q** 국가기관으로부터 내역입찰방식으로 계약체결하여 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, 당 현장의 경우 낙하물방지망이 가설공사 항목에 포함되어 있고, 당초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상에도 낙하물방지망이 일부 산정되어 발주처에서는 안전관리비 사용 계획에 포함된 비용만큼 도급내역에서 삭제하여 계약 금액을 감액조치 지시하는바 동 항목을 내역에서 삭제함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.

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,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(노동부 고시 제2001-22호), 제7조 및 제8조에 의거 공사 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 그러나 발주자는 추후에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종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, 공사 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부분(근로자 주 출입구, 안전통로 등에 설치되는 낙하물방지망)에는 사용 가능하므로 동 내역과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을 정확히 확인 후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